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2.8 Vol. 35



P&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정무위원회 구성

06 1. 구성
08 2. 소관법률

Ⅱ.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8 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9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4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6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1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9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32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33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5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1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42 **1. 상정 법률안 목록**

Ⅳ. 상임위원회

44 **1. 상정 법률안 목록**

Ⅴ. 본회의

4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47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별첨 **1.용어해설**
2.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정무위원회

1. 구성
2. 소관법률

정무위원회

위원정수 24 | 현원 24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9 | 비교섭단체 1



위원장
백 혜 련

선 거 구 경기 수원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재선(20대,21대)



위원
강병원
서울 은평구을
재선(20대,21대)



위원
김성주
전북 전주시병
재선(19대,21대)



위원
김한규
제주 제주시을
초선(21대)



위원
민병덕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초선(21대)



위원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21대)



위원
박용진
서울 강북구을
재선(20대,21대)



위원
박재호
부산 남구을
재선(20대,21대)



위원
소병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초선(21대)



위원
오기형
서울 도봉구을
초선(21대)



위원
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초선(21대)



위원
이용우
경기 고양시정
초선(21대)



위원
황운하
대전 중구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재선(20대,21대)



위원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초선(21대)



위원
김희곤
부산 동래구
초선(21대)



위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재선(20대,21대)



위원
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3선(19대,20대,21대)



위원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18대,19대,20대,21대)



위원
윤주경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윤창현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최승재
비례대표
초선(21대)

무소속



위원
양정숙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소관부처현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부처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법률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경제·재정부문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공동소관)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지속가능발전기본법
	6	청년기본법
	7	행정규제기본법
	8	행정조사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	제조물책임법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	공인회계사법
	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12	금융지주회사법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9	담보부사채신탁법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금융위원회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	보험업법
	23	상호저축은행법
	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5	신용보증기금법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신용협동조합법
	28	여신전문금융업법
	29	예금자보호법
	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9	전자금융거래법
	4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2	중소기업은행법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	공익신고자보호법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	행정심판법
국가보훈처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9	독립기념관법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1	보훈기금법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3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국가보훈처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8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해양관광진흥법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O	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O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O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O	2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발의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683호



이 재 명

선 거 구	인천 계양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해외에서는 제한이율 초과 시 이자 전부에 관한 청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금리 금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며,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562호



박 성 민

선 거 구	울산 중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핀테크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3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51호



진 선 미

선 거 구	서울 강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20대,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4

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832호



홍 석 준

선 거 구	대구 달서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1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그리고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5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50호



진 선 미

선 거 구	서울 강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20대,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수행완료가 계약상 이행기한보다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체상금의 미청구'를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없어 현행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경우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지원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용역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험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3호 신설 등).

6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564호



윤 두 현

선 거 구	경북 경산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7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594호



정 태 호

선 거 구	서울 관악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협의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9항 신설).

8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72호



전 해 철

선 거 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20대,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4.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76호



양 향 자

선 거 구	광주 서구을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4. 제안

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내국인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설하는 학과 및 학부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전단).

다.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

년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10

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557호



고 용 진

선 거 구	서울 노원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0.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종목별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나.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829호



변 재 일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5선(17대,18대,19대, 20대,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1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항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75호



양 향 자

선 거 구	광주 서구을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4.	제안

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사.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아.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자.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13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24호



이 종 성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 · 수입 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안 제31조의6 신설 등).

14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482호



강 훈 식

선 거 구	충남 아산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1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 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15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08호



김 정 호

선 거 구	경남 김해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와 같이 법에 상향입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16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95호



이 형 석

선 거 구	광주 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 선출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해 과징금처분만을 받음.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17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699호



이 용 선

선 거 구	서울 양천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규정이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의 지원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며(안 제64조),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8제3항, 제64조제6항).

18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665호



김 정 재

선 거 구	경북 포항시북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7.26. 제안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 · 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런데,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 · 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 · 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 ·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등(안 제3조제4항,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제30조, 제37조 등).

나.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등(안 제9조의2, 제49조의3제2항).

다.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츠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배당 기준액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도록 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의 예외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며, 리츠공모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를 확대함(안 제14조의8, 제21조제1항제1호 신설, 제28조).

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 · 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안 제23조, 제41조).

마.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안 제4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9

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73호



임 종 성

선 거 구	경기 광주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0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사고발생시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1천 5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신설).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O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6726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08.02.	원안가결
	2022.08.02.	정부이송
	2022.08.12.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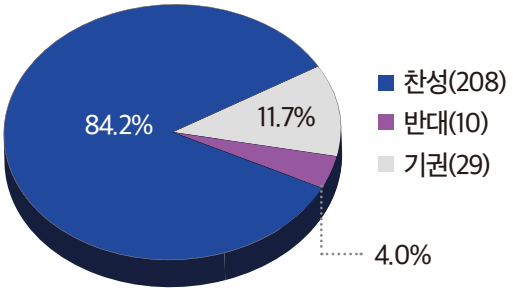
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3건)

[21160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1156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등 13인)
[21160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08.01 / 2022.08.02
■ **발의자 / 제안자**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47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47인(찬성 208인, 반대 10인, 기권 29인)



찬성 (208인)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중 박영순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영석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비)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승래 조은희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 의원

반대 (10인)

권인숙 김의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의원



기권 (29인)

강득구 강은미 김두관 김성주 남인순 도종환 민형배 박범계 박상혁 신동근
안호영 양이원영 유동수 윤건영 윤영덕 이소영 이용선 이원택 이재정 이태규
임종성 장철민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최혜영 허 영 홍영표 홍익표 의원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6727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08.02.	원안가결
	2022.08.02.	정부이송
	2022.08.12.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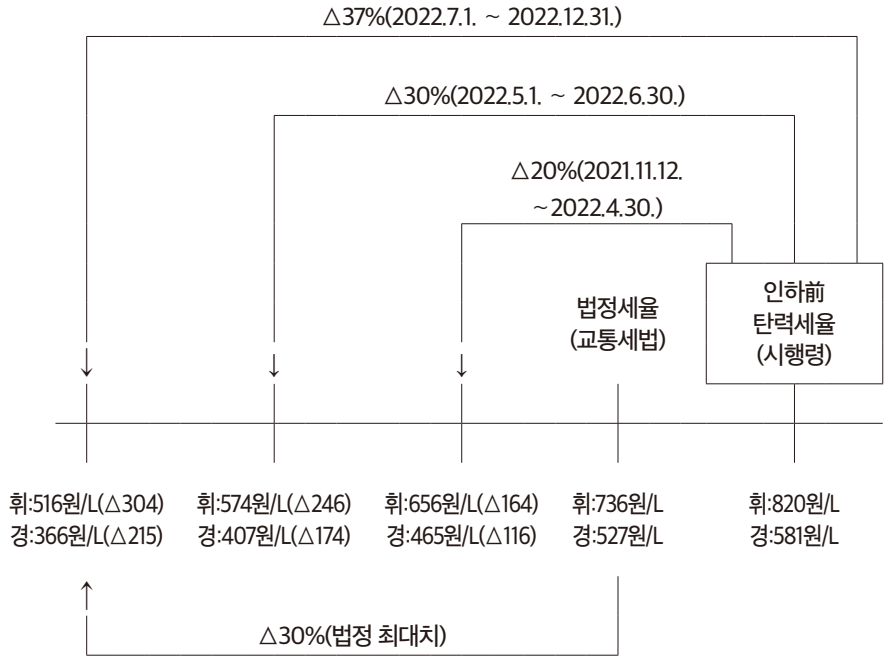
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5건)

[211569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13인)
[21164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211605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211609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211632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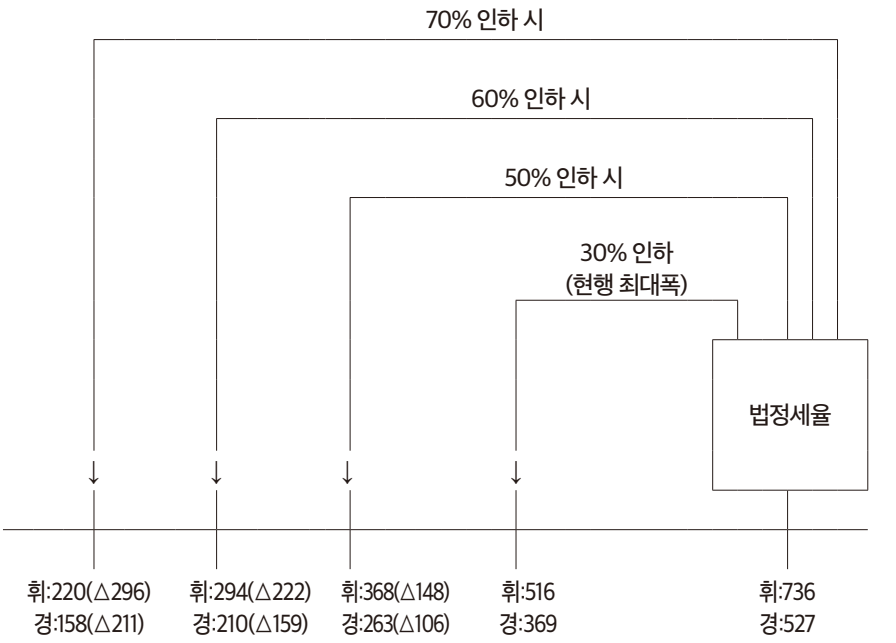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유류세 감면 효과>



주)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교육세(15%), 주행세(26%),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유류세율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탄력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른 유류세 추가 감면 효과>

(단위: 원/L)



주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교육세(15%), 주행세(26%),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유류세율 기준
2) 50%, 60%, 70% 인하 시 감면액(괄호안 △)은 30% 인하(현행 최대폭) 대비 감면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현황 >

(단위: 원/L)

구분	법률 ('08.9.26.)	시행령 ('09.5.21.)	'18.11.6. ~ '19.5.6.	'19.5.7. ~ '19.8.31.	'21.11.12. ~ '22.4.30.	'22.5.1. ~ '22.6.30.	'22.7.1. ~ '22.12.31.
휘발유	475	529	450	492	423	370	332.5
경유	340	375	319	349	300	263	238
인하폭*	-	-	△15%	△7%	△20%	△30%	△37%

주) 인하폭은 휘발유에 대한 시행령의 인하 전 탄력세율 529원/L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발언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안정에 효과 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존재합니까? 유류세 인하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로 9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GTX-B와 C노선을 다 건설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만한 돈을 쓰는 사업이라면 실제로 인하한 세액 대비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는지 분석해서 추가 인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상식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금은 깎아 줬다는데 요지부동 인 기름값에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구심은 해소 가 되었습니까?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산자부는 9개월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분석 보고서 한 편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용역이라도 맡겨야 할 텐데 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저의 의원실 동료들과 함께 분석 해 보니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세금 182원을 깎아 줬는데 소비 자가는 69원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 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해 온 소비자단체의 자료 에서도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6월까지 정유사 정제마진은 세금 인하 전 보다 7배 폭등했습니다. 정유 4사는 상반기 영업 이익 10조 원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유류세 인하를 기회로 정유사들이 더 높 은 마진을 책정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 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현실입니다. 정유사들에게 다 퍼주고 고작 69원 인하 혜택을 누릴 바에야 차라리 저 9조 원을 월 1만 원 전 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에, 유가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안전운임제 확대와 납품단가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유 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둬서 유류세 인하 세수를 보전하고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국 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도 없이 효과도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 나오는 보완책이 유류세 인하액 소비자 직접 환급 같은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 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정유사가 수요에 따 라 공급가를 조정하면 그만이라 현행 유류세 인 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유사에게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요청하는 것 도 기약 없는 간청일 뿐입니다. 담합 단속도 이미 정부가 하고 있던 일입니다.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시늉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F 같은 국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 비용을 부당하게 면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도 큰 문제입니다. 차라 리 유류세 세수를 이용해 국민들을 지원하는 편 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류세 인하, 감면 정책의 한계를 이해하 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잘 하지 않거나 그 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 법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와 유류세 인하에서 야

기된 정유사들의 대규모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와 취약계층 지 원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시장자본주의의 선두에 있는 미국 그리고 영 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횡재세 시행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대담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세금을 깎아줘야 경제 가 살아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 가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 주고 더 오르면 더 깎아 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 각하는 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민생특위 기껏 만들었는데 당연히 신속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반대 했다는 손가락질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분석도 없이 보완책도 없이 덮어놓고 세금 인하를 추진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나태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묻지마 유류세 인하보다 분명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표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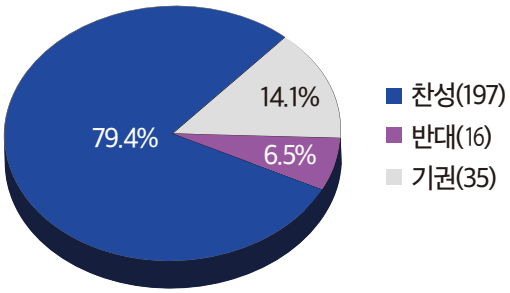
올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민생 고는 연일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지난 5월 정부 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렸습니다. 이런 유류세 인하가 실제 유가 하락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의문이 제기 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추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 하여 지난 7월 1일부터는 시행령 기준 최대 한도 인 37%의 유류세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앞질렀습니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으로 20%, 경유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시중 기름값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고유가에 허덕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0원 한 장이라도 낮아지는 가격이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 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 야겠지만 국내 유가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유류세 탄력 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일까요? 유류세 인하의 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역진성입니다. 국회예정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세 부담 효과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15만 8000원의 세 부담 완화될 때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는 고작 연평균 1만 5000원의 세 부담 완화됐습니다. 이런 세 부담 완화 수준을 소득과 비교해 봐도 1분위 저소득 가구가 소득 대비 0.08%의 혜택을 받을 때 10분위 고소득 가구는 그 3배에 달하는 0.22%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유류 세 인하 혜택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명백히 편중돼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는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기준 9810만t에 이르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그 10분의 1인 최소 920만t에서 최대 280만t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은 탄소경제에 비용을 매기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방향에 정확히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추경호 경 제부총리는 국회가 법정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최근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력세율 50% 확대가 현재 가장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님을 증명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마저 이렇게 말하는 마당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뒤늦게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도 애매하고 타이밍도 뒷북이며 역진 성은 크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스스로 크게 무너뜨리는 이런 법안을 굳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용혜인 의원도 얘기

했듯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08.01 / 2022.08.02
■ **발의자 / 제안자**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48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48인(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



찬성 (197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중 박재호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기홍 유상범 윤관석 윤두현 윤영석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비)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호 이원욱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 의원

반대 (16인)

강은미 고용진 권인숙 김두관 김성주 김의겸 류호정 박영순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윤후덕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의원

기권 (35인)

강득구 강민정 남인순 도종환 민형배 박범계 박상혁 박 정 박주민 신동근
안호영 양이원영 어기구 유경준 유동수 유의동 윤건영 윤영덕 이소영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태규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진선미 최혜영 허 영 홍영표 홍익표 의원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6728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08.02.	원안가결
	2022.08.02.	정부이송
	2022.08.12.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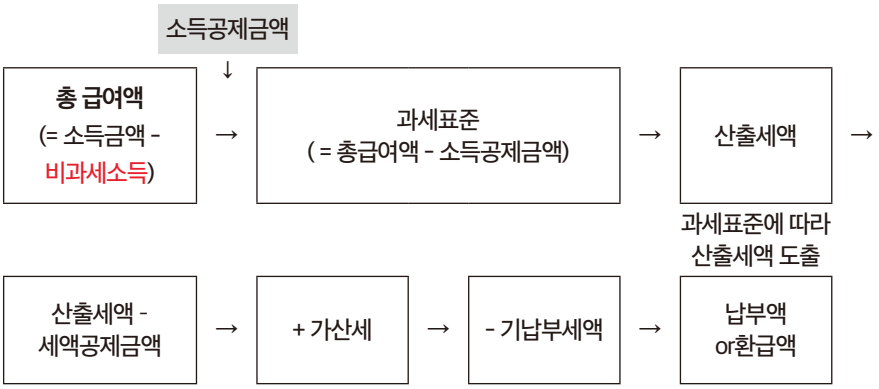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4건)

[2116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52인)
[2116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등10인)
[21163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116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참고자료

<소득세액 계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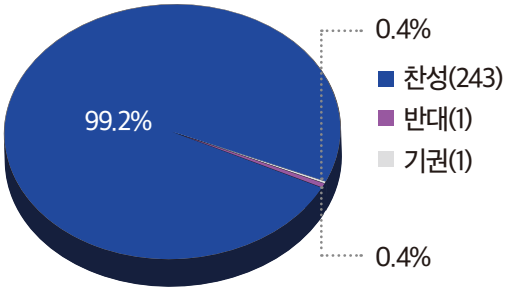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 별 비과세한도 및 개정 연도>

항목	근거 (시행령 제12조)	한도	개정연도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	제3호	월 20만원 이내	1994년
선원 승선수당	제10호		1998년
교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제12호		1995년
기자 취재수당	제14호		1994년
벽지수당	제15호		2008년
공무원 지방이전 지원금	제17호		2013년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08.01 / 2022.08.02
■ **발의자 / 제안자**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45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45인(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



찬성 (243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준현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중
박영순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제원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 의원

반대 (1인)

용혜인 의원

기권 (1인)

홍영표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8월호는 2022.7.15.부터 2022.8.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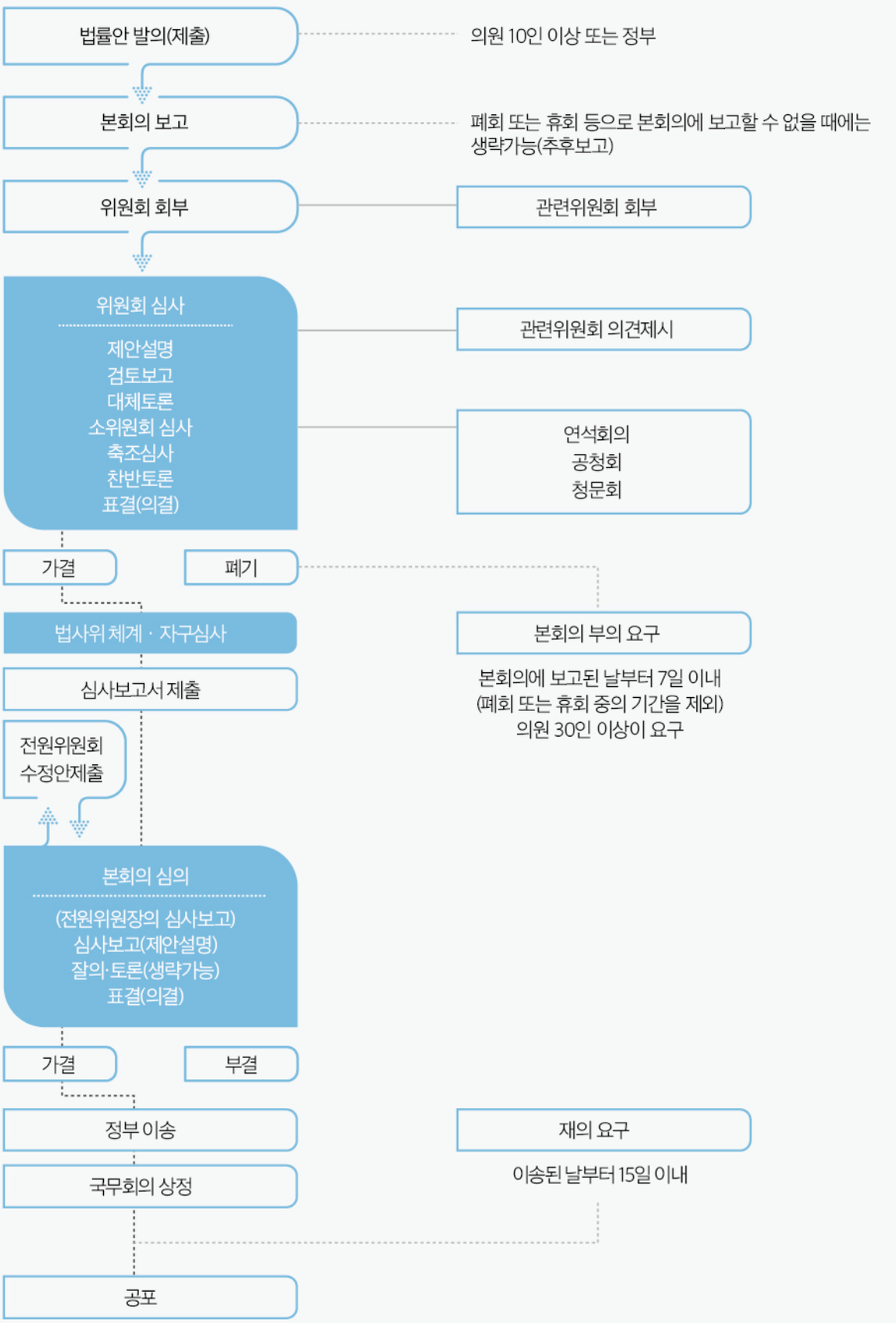
일자 / 위원회	15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8월1일	2일	3일	4일	5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 제398회 제2차	● 제398회 제3차	● 제398회 제4차	● 제398회 제5차	● 제398회 제6차	● 제398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						
국토교통위원회								●			●	●									
외교통일위원회												●									
정보위원회								●					●								
여성가족위원회									●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www.draju.com